2019년도 제166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o 일 시 : 2019. 8. 25.(월요일), 17:00
- o 장 소 :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o 참 석 자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3분과위원회 위원 3명 참석
- 심의위원 : 강상욱, 백대용, 손승우(분과위원장) 위원
- o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분과위원장
2. 전차(제2019-157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Ⅱ.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o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5,700건(안건번호 제2019-99662 호~101352호)
 - 회의결과: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중단된 게시물에 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만 권고하기로 의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o 손승우 분과위원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 제166회 저작권보호심 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19-157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손승우 분과위원장 : 전차 회의록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의견을 구함
- 성원영 전문위원 : 회의록 8쪽의 사행성 사이트 주소 공개 여부에 관하여 위원들에게 의견을 구함
- A 위원 : 회의록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함
- B 위원 : 해당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여 회의록을 공개하는 것이 바람 직함
- C 위원 : 의견에 동의함
- 손승우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한 이상 없음을 확 인하며 사행성 사이트 주소는 비공개로 하고 나머지는 모두 공개하기 로 결정함

3. 안건상정

- o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성원영 전문위원 : 금일 심의대상 안건은 안건번호 제2019-99662 호~101352호로 총 5,700건임

안건번호 제2019-99662호는 실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것으로, 포털사이 트 이용자가 영화 복제물을 제공받을 수 있는 토렌트 마그넷(magnet) 주소를 게시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을 보여주면서)심의대상 게시물의 토렌트 마그넷 주소를 클릭하면 비트토렌트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등에서 토렌트 마그넷 주소가 자동 입력되어 영상저작물(우리말 자막 포함) 파일을 무료로 다운로드 할 수 있음

토렌트 마그넷 주소나 토렌트(.torrent) 파일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내용이 존재하지 아니하지만, 불법복제물을 다운로드할 때 필요한 정보를 담고 있어, 이용자들은 이러한 정보를 취득한 후 비트토렌트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통해 실행함으로써 파일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됨

- 손승우 분과위원장 : 전문위원의 안건 설명을 바탕으로 안건번호 제 2019-99662호 토렌트 마그넷 주소 게시물에 대한 의견을 구함
- C 위원 : 본 건의 자동 연결되는 토렌트 마그넷 주소는 불법복제물로 의 링크를 설정하는 게시물처럼 저작권 침해를 방조하는 정보에 해당되는지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저작권법 제 133조의3은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을 '저작권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 또는 정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중송신권 침해를 방조하는 토렌트 마그넷 주소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정보로서 시정권고 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될 수 있음

하급심 법원은 "피고인들은 토렌트 파일을 게시하면서 이용자들이 해당 파일을 다운로드한 후 비트토렌트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불법으로 복제된 저작영상물의 원본을 전송받아 저작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위 게시행위를 통해 이러한 이용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고 평가하기에는 충분하므로, 피고인들에게 적어도 저작권 침해에 대한 방조의 죄책은 있다고 보여진다."고 판시한 바 있음

- C 위원 : 충분한 답변이 되었음
- B 위원 :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하며 토렌트 마그넷 주소 제공은 저작 권침해 방조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임
- C 위원 : 본 건 영상저작물은 2019. 6. 20. 국내에서 디지털 개봉되어 판매 중인 것으로, 심의대상 게시물이 영상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됨
- A 위원 : 의견에 동의함
- 손승우 분과위원장 : 안건번호 제2019-99662호는 토렌트 마그넷 주소를 제공한 사안으로,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

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렵고, 공중송신권 침해를 방조하는 정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만장일치로 시정 조치의 권고를 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안건번호 제2019-99663호는 실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건으로, 네이버 이용자가 블로그에서 일본 영화 전체분량(1시간 50분 51초, 우리말 자막 포함)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을 보여주면서) 심의대상 게시물에서 제공하는 영상 물의 재생 횟수는 2019. 8. 26. 현재 약 9,300회임 우리말 번역 및 자막 제작자에 관한 정보는 확인되지 아니함 참고로 해당 블로거는 다수의 해외 애니메이션 영상저작물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음
- 손승우 분과위원장 : 전문위원의 안건 설명을 바탕으로 안건번호 제 2019-99663호 영상저작물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는 블로그 게시 물에 대한 의견을 구함
- A 위원 : 영화 전체 분량을 제공한 것으로 해당 저작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
- C 위원 : 의견에 동의함
- B 위원 :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같은 생각임
- 손승우 분과위원장: 안건번호 제2019-99663호는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만장일치로 시정 조치의 권고를 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 안건번호 제2019-99664호~99673호, 101352호는 실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것으로, 웹하드 사이트의 이용자가 다수의 만화불법복제물을 판매한 사안임

(민원인이 직접 제출한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실행화면을 제시하면서)민원인은 만화 복제물에 대하여 신고도구를 이용하여 직접 신고하였고, 지금 보고 계시는 자료는 모두 민원인이 수집한 것임

- 손승우 분과위원장 : 전문위원의 안건 설명을 바탕으로 안건번호 제 2019-99664호~99673호, 101352호 웹하드의 만화 불법복제물에 대한 의 견을 구함
- C 위원 : 게시자가 영리 목적으로 저작물을 복제·전송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B 위원 : 이의 없이 시정권고 가결 의견임
- A 위원 : 의견에 동의함
- 손승우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19-99664호~99673호, 101352호는 만화 저작물의 불법복제물을 제공하고 있는 사안으로,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만장일치로 시정 조치의 권고를 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 안건번호 제2019-99674호~99698호는 보호원이 조사

하여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네이버 이용자가 블로그에 최신가요 음원을 배경음악으로 이용한 동영상을 제공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을 보여주면서) 해당 영상들은 음원과 함께 음원을 실연한 가수 사진 또는 가사, 드라마 스틸 컷 등을 무단 이용하고 있음

- 손승우 분과위원장 : 전문위원의 안건 설명을 바탕으로 안건번호 제 2019-99674호~99698호 음악저작물 등을 무단 이용한 영상물에 대한 의 견을 구함
- C 위원 : 심의대상 게시물에서 제공하는 동영상 밑에 쓰인 글이 음원 의 '가사' 인지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해당 음원의 '가사' 한 곡 전체 분량도 함께 제공되고 있음
- C 위원: 게시자가 심의대상 게시물에서 한 곡 전체분량의 음원을 제 공하였으며, 심의대상 게시물 외에도 다수의 음원을 제공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정이용이나 인용 등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임
- A 위원 : 의견에 동의함
- B 위원 : 의견에 동의함
- 손승우 분과위원장 : 안건번호 제2019-93054호~93056호는 심의대상 게

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우 므로 만장일치로 시정 조치의 권고를 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19-99699호~101351호는 모두 단순 복제한 음악, 프로그램, 게임, 만화, 어문, 영상물 등을 웹하드사이트 등에서 공중의 이용에 무단 제공하고 있는 사안임 안건번호 제2019-99704호는 '디앤씨미디어'에서 출판한 만화 '흔해빠진 직업으로 세계최강'의 복제물을 웹하드에서 판매한 사안임

(다운로드 화면,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압축파일을 다운로드 하면 다수의 스캔 파일이 제공되고 있음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다운로드 화면,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19-99762호부터 제2019-99774호까지는 모두 게임 프로그램의복제물인데, 저작권사 'Numantian Games'의 2017년도 게임프로그램인 '데이 아 빌리언스' 복제물을 웹하드에서 판매한 사안임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다운로드 화면,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19-99877호는 네이버 밴드에서 출판 복제물을 제공하고 있음 (해당 밴드를 제시하면서)밴드 명을 보면 불법복제물을 공유를 주된목적으로 개설된 것으로 보임

본 건 게시물에서는 5개 이상의 완결 소설 복제물을 제공하고 있음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19-99940호, 99969호는 네이버 밴드에서 현재 상영 중인 영화 '기생충(2019), '나랏말싸미(2019)'을 제공하고 있음

- A 위원 : 안건번호 제2019-99969호 게시물의 밴드명은 '☆ ☆☆ ☆☆' 인데 민원인이 신고하여 심의를 요청한 건인지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민원인 신고 없이 보호원에서 조사하여 심의를 요 청한 것임

지난 전체위원회(2019. 4. 26. 개최, 제2019-50회)에서는 밴드를 통한 불법복제물 확산이 심화되고 있고, 밴드가 저작권을 존중하지 않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음

이에 심의위원회는 밴드에서 불법복제물등이 전송된 사실을 입증할수 있는 자료가 제출된 경우라면 해당 밴드의 특성을 종전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시정권고 여부를 결정하기로 논의한 바 있음이러한 논의사항을 반영하여 이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는 문제가되는 밴드의 개설 목적, 가입의 용이성 내지 폐쇄성, 회원수의 많고적음 등을 종전처럼 엄밀하게 검토하고 있지는 아니함

- A 위원 : 답변이 되었음
- 성원영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다운로드 화면,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19-100009호, 100511호는 모바일 웹하드 사이트에서 2019년 개봉한 최신 영화를 스트리밍 등의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음
- A 위원: 안건번호 제2019-100511호는 지난 제3분과위원회(2019. 8. 19. 개최, 제2019-157회)에서 심의한 '분노의 질주: 홉스&쇼(2019)' 영화의 재생화면과 동일한 사행성 사이트 마크가 삽입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 성원영 전문위원 : 그렇다고 대답함 또한 화질이 좋지 않은 것으로 봐서는 캠버전일 가능성이 큼

- B 위원 : 특별한 이견은 없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동의하며 모두 단순 불법복제물이므로 이의 없이 시정권고 가결 의견임
- A 위원 : 모두 불법 복제된 저작물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어 저작권법 제133조의3의 시정권고 요건을 충족해보임

심의일 현재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사안에 대해서는 복제·전송 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조치만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임

- C 위원 : 의견에 동의함
- 손승우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19-99699호~101351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 를,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조치 권고를 가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19-99662호~95514호 게시물에 대해서는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건에 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는 것으로 의결함"

4. 폐회 선언

o 손승우 분과위원장이 제166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 함

2019년 제166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 9. 2.

분과위원장 손승우

위원 강상욱

위원 백대용